



치매 국가책임제와 보험의 역할

김석영 연구위원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통하여 종합적인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경증치매환자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음. 보험회사들도 치매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치매관련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데 최근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함. 다만 치매환자 발생 관련 통계가 축적되지 못하여 보험금 지급 추이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치매보험 상품의 보장은 제한적임. 보험회사는 고령화로 인해 경증치매환자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적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치매보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을 위해 치매의 조기진단과 예방에서부터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이루어지는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임¹⁾

- 맞춤형 사례관리, 장기요양 확대 검토, 치매환자의료지원 강화, 요양비·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치매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계획 추진 결과, 2018년 현재 6년 전에 비해 치매 간병 부담이 줄고, 보호자가 직장을 그만둔 비율도 27%에서 14%로 감소함²⁾

- 정부는 이미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이후, 치매환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장기요양 인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음

- 거동이 불편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치매환자들에게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증인 3등급의 판정기준 하한 점수를 하향 조정함
 - 제도시행 초기 3등급 판정기준 하한점수가 55점이었으나 2012년 53점, 2013년 51점으로 조정함
- 2014년 기존의 3등급 체계를 5등급으로 전환하여 치매환자를 별도로 관리하기 시작함
 - 기존 3등급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3등급을 3, 4등급으로 분류하고 일명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을 신설함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 9. 18) 참조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 9. 19) 참조

- 2018년부터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치매환자의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완화함
 -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환자가 인지지원등급에 해당되며, 일반적인 치매등급 CDR척도3)(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1점에 해당됨
 - 인지지원등급 대상자는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하여 주·야간보호에서 인지기능 개선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경증치매 환자인 인지지원등급 인정자 수가 2018년 1월 374명에서 9월 9,328명으로 크게 증가함

- 제도 시행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경증치매환자들을 고려할 때, 정확한 경증치매 환자 발생비율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 보건복지부·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조사한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에서 201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인지지원등급에 해당하는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7.9%로 추산됨

〈표 1〉 장기요양등급 판정현황

(단위: 명)

구분	장기요양등급			치매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18년 1월	42,937	79,553	195,880	225,921	42,742	374
2018년 9월	45,003	84,535	208,199	254,611	50,643	9,328
1월 대비 증가율	4.8%	6.3%	6.3%	12.7%	18.5%	2,394.1%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자료실

■ 한편 보험회사들도 치매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치매관련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음

- 1992년부터 중증치매를 보장하는 단독상품을 판매하였으나, 본격적인 판매는 2003년에 시작됨
 - 그러나 판매가 부진하여 2008년에 치명적 질병(CI, Critical Illness)보험과 연계하여 판매하고 있음
- 중증의 인지기능 장애로 CDR척도검사 결과가 3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를 보장하는 상품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음
 - 중증치매로 판정될 경우 일시금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간병연금이 지급됨

3) CDR 척도는 전통적으로 3점 척도를 사용하나 최근 5점 척도의 한국판 CDR이 제작됨. 인하대·성균관대·용인효자병원 등 최성혜 외 치매연구회,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CDR) 척도의 타당도」, 『대한신경과학회지』, 19(6) 참조함

■ 최근 보험회사들은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함

- 보험회사는 치매환자들의 보장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도치매상태를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함⁴⁾
 - 경도치매상태란, CDR척도검사 결과가 1점에 해당하는 상태인 데, 경도치매상태로 진단 시 진단급 여금을 지급하는 상품임

〈표 2〉 치매 단계별 기준

구분	경도치매	중등도치매	중증치매
판단기준	CDR 1점	CDR 2점	CDR 3점 이상

■ 치매환자 발생 관련 통계가 축적되지 못하여 보험금 지급 추이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보험회사들은 경증치매 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가입금액을 낮추거나 연금보장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 정확한 경증치매 발생비율을 예측하기 어려워 경증치매환자는 정확한 숫자 파악 자체도 어려움
- 보장급부가 실질적인 도움에는 부족하지만, 향후 치매환자 급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가입금액이 소액인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면 보장급부 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고령화로 경증치매환자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회사는 공적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치매보험 상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지나친 상품 경쟁으로 인한 고위험 치매상품 개발, 손실 발생, 그리고 상품판매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과거 암 발생률 급증으로 보험회사는 암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한 사례가 있음
- 상품 보장급부의 현실화와 함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무보증(Non Guaranteed) 상품 개발⁵⁾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kiri**

4) 보험회사 약관에서는 경증치매라는 표현대신 경도치매라는 표현을 사용함

5) 김석영(2018. 7. 2), 「장기보장을 위한 보험료 무보증상품 활성화」, 『KiRi 리포트』를 참조함